

#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양민규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108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년 10월 16일

발 의 자 : 양민규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김제리, 박순규, 권수정,  
김춘례, 송명화, 김정태,  
이영실, 김경우, 오현정,  
김기덕, 봉양순 의원 (11명)

## 1. 제안이유

- 최근,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 회의장 내에서 폭언 등의 소란을 피우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이를 제지 할 수 있는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장, 교육감 등 집행부 공무원이 의회 회의장에서 소란 등 질서위반 행위를 할 경우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등이 이들에 대해 퇴장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시장, 교육감 등 집행부 공무원의 회의장에서의 소란 행위 시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60조제4항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 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조)

다. 기 타 :

##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#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의장 또는 위원장은 시장, 교육감, 그 밖의 집행부 공무원이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할 경우에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0조(회의의 질서유지) ① ~ ③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	제60조(회의의 질서유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의장 또는 위원장은 시장, 교육감, 그 밖의 집행부 공무원이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할 경우에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.</u>